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6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들의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골자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설치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하도록 함(제2조)
-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함(제3조)
- 우선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함(제4조)
-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등은 직접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제5조, 제6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공공시설내의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3.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

②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 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동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노인,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부		
신청내용	신청장소			
	신청대상	매점	자동판매기	기타
	신청내용	매점 자동판매기 기타	개소(m' 개소(커피 대, 음료 대) 개소	
<p>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귀하</p>				
<p>※ 구비서류</p> <p>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p> <p>2. 우선허가 증명서류 1부</p> <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p>				

관계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모자복지법

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정의) ①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

②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